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□ 효력발생일 : 2015. 7. 17.

□ 정정 사유

(1) 클래스 추가 : S, Cp, Cp-E, Cp2, Cp2-F, S-P

(2) 다른 자투자신탁 변경 사항 반영

□ 정정 내용

항목	정정전	정정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<u>S : B5493</u> <u>Cp : B5494</u> <u>Cp-E : B5495</u> <u>Cp2 : B5496</u> <u>Cp2-F : B5497</u> <u>S-P : B5498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<u>S : B5493</u> <u>Cp : B5494</u> <u>Cp-E : B5495</u> <u>Cp2 : B5496</u> <u>Cp2-F : B5497</u> <u>S-P : B5498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기재	<u>2015.07.17 : 클래스 추가(S, Cp, Cp-E, Cp2, Cp2-F, S-P)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2015. 1. 31.	<u>2015. 6. 30.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클래스 추가	<u>S클래스(펀드코드 : B5493)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</u>

		<p>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 <p><u>Cp클래스(펀드코드 : B5494)</u>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 <p><u>Cp-E클래스(펀드코드: B5495)</u>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p> <p><u>Cp2클래스(펀드코드: B5496)</u>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</p> <p><u>Cp2-F클래스(펀드코드 : B5497)</u>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p> <p><u>S-P클래스(펀드코드 : B5498)</u>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조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삭제	트러스톤 밸류웨이 퇴직연금 펀드[채권혼합] 삭제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클래스 추가	⑩ S클래스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

<p>2) 종류별 가입자격</p>		<p>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 <p>⑪ Cp클래스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 <p>⑫ Cp-E클래스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p> <p>⑬ Cp2클래스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</p> <p>⑭ Cp2-F클래스 :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p> <p>⑮ S-P클래스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</p>	<p>클래스 추가에 따른 환매수수료 기재</p>	<p>A, Ae, C1, C2, C3, C4, Ce, W, I, S :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, 30일 이상 90일 미만:</p>

3) 환매수수료		<u>이익금의30%</u> <u>Cp,Cp-E, Cp2, Cp2-F, S-P :</u> <u>환매수수료 없음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클래스 추가	<u>클래스 추가에 따른 수수료 기재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클래스 추가	<u>클래스 추가에 따른 수수료 기재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기재	<u>트러스톤밸류웨이4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의 클래스 추가 내용 반영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클래스 추가	<u>클래스 추가에 따른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과세제도 기재</u>